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7
----------	-----

제출년월 : 2025년 9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나.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 12. 31.에서 2030. 12. 31.로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10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 나.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 신설(안 제10조)
-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신설(안 제11조)
- 라.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 12. 31.로 5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5. 7. 10. ~ 2025. 7. 30. (20일간)

- 결과: 별도 의견 없음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6)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7) 아동영향평가 결과: 제외대상

8)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11조제1항 중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자산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의 연번 1의 기금존속기한(년)란 중 “2025”를 “2030”으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5의 기금존속기한(년)란 중 “2025”를 “203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 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30. 12. 31 (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임의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3	체육진흥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4	재난관리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법정
5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2026. 12. 31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임의
6	노인복지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7	양성평등기금	2026. 12. 31 (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임의
8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법정
9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0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2	도로굴착복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3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	법정
14	기후변화기금	2028.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5	사회투자기금	2030.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6	아동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7	장애인체육기금	2027.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8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생략)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u>사항</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u><신설></u>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 ⑦ (생략)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 까지와 같음)
<u><신설></u>	⑨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 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11조(통합기금의 관리) ① 통합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u>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u>	제11조(통합기금의 관리) ① ----- ----- <u>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u> <u>기금자산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u> <u>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u> <u>예치·관리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유 미 조